

입찰유의서



제1조(목적) 이 유의서는 신평택발전 주식회사(이하 “당사”라고 한다)가 행하는 구매, 용역, 공사에 대한 입찰에 있어 당해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가 유의하여야 할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유의서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이 입찰유의서에서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사 규정 및 계약일반조건(이하 “일반조건”이라 한다)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입찰참가신청)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공고에 기재된 입찰참가신청 마감일까지 다음 각호의 서류를 당사에 제출하여 입찰참가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입찰참가신청서(당사 소정양식) 1통
2. 입찰참가자격을 증명하는 서류(입찰공고문 참조) 1통
3. 법인 인감증명서(개인사업자의 경우 개인인감증명서) 1통
4. 법인 등기사항전부증명서 1부(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으로 대체)
5. 사업장등록증 사본(원본대조필) 1부
6. 입찰보증금 또는 입찰보증금지급각서(당사 소정양식) 1부
7. 대리인 참석의 경우 위임장(인감도장 날인) 및 재직증명서 각 1부(신분증 지참)
8. 입찰등록자(대리인) 신분증(당사 소정양식) 1부
9. 청렴계약 이행각서(당사 소정양식) 1부
10. 기타 공고 또는 통지로 요구하는 서류

② 제1항 제2호의 경우에는 원본을 제시하거나 사본에 “원본과 같음”을 명기하고 인감(인감증명서상의 인감 또는 입찰참가신청서상의 사용인감)으로 날인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행령 제7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동계약이 허용된 경우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공동수급협정서를 제1항 각호의 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조(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 ① 입찰참가자격의 판단기준일은 입찰참가신청서류의 접수마감일(이하 “입찰참가등록마감일”이라 한다)로 하며, 입찰참가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이후 입찰서제출 마감일까지 당해 입찰참가자격을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② 지역제한경쟁입찰을 부치는 경우 그 주된 영업소(평가담당부서)의 소재지 기준일은 입찰공고일 전일로 하며 계약체결일까지 계속 유지하여야 한다.

- ③ 입찰참가자격제한을 받은 경우에는 입찰참가등록마감일 전일까지 입찰참가자격제한기간이 만료되어야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 ④ 입찰전에 상호 또는 대표자의 변경(법인의 경우에는 법인등기부를 기준으로 한다)이 있는 경우에는 변경 신고를 한 후 변경된 상호 또는 대표자 명의로 입찰에 참가하여야 한다.

제5조(설계서 등의 열람) 입찰자는 입찰금액의 산출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설계서(설계도면, 시방서 및 내용설명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열람할 수 있다.

제6조(내용설명) 내용설명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소정의 국가기술자격수첩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국가기술자격수첩 제시가 필요하지 아니한 용역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조(입찰에 관한 서류)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이하 “입찰관련서류”라 한다)를 열람할 수 있으며 경우에 따라서는 이를 교부받을 수 있다.

1. 입찰공고문
2. 입찰서(당사 소정양식)
3. 표준계약서(당사 소정양식)
4. 계약일반조건
5. 계약특수조건
6. 과업내용서
7.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한 서류

② 발주자는 제1항의 입찰에 관한 서류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입찰공고 등에서 정한 금액을 납부할 것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자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8조(관계법령 등의 숙지)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당사의 대금지급 기준, 입찰관련 규정 및 입찰 관련 서류를 입찰 전에 완전히 숙지하여야 하며, 이를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참가자에게 있다.

②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관련서류의 검토과정에서 발견한 입찰에 관한 서류상 착오, 누락사항 또는 기타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는 입찰서 제출마감일 전일까지 당사에 그 설명을 요구할 수 있다.

제9조(입찰보증금) ① 입찰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입찰참가신청마감일(공휴일인 때에

는 전일)까지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의 입찰보증금을 현금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을 당사에 납부하여야 한다. 단, 당사가 인정하는 경우 지급각서(당사 소정양식)로 대체할 수 있다.

② 입찰서 유효기간 중에 입찰서를 철회하거나, 낙찰자 또는 계약협상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소정의 기한 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입찰보증금은 당사에 귀속하며, 지급각서를 제출한 경우에도 입찰보증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현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③ 낙찰되지 않은 입찰자의 입찰보증금은 낙찰자가 결정된 후 즉시 반환한다. 다만, 낙찰자의 입찰보증금은 계약체결 후 즉시 반환한다.

④ 보증서 등에 의한 입찰보증금의 보증기간은 입찰서 제출마감일 이전부터 입찰서 제출마감일 30일 이후까지 이어야 한다.

제10조(입찰참가) ① 입찰참가신청을 한 자가 아니면 입찰에 참가할 수 없음을 원칙으로 한다. 단, 입찰공고시 별도의 입찰참가신청절차를 생략한 경우 예외로 한다.

②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대리인을 지정한 경우에는 그 대리인도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다만, 입찰참가신청서를 제출하는 때부터 입찰 개시 시각 전까지 입찰대리인을 지정하거나 입찰대리인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그 대리인이 입찰에 참가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의 자격은 입찰참가자가 법인인 경우 당해 법인의 임·직원에 한하며, 임·직원에 대한 확인은 사원증, 재직증명서 등에 의한다.

④ 계약사무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부정당업자로 입찰참가자격을 제한받고 있는 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으로 할 수 없다.

제11조(입찰서의 작성) ① 입찰서는 당사 서식에 의하여 작성하여야 하며, 입찰금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총액을 표기하여야 한다.

② 입찰자는 입찰서에 기명날인을 함에 있어 입찰자 성명(법인의 경우 대표자 성명)을 기재하고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을 허용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③ 입찰서의 기재사항중 말소 또는 정정한 곳이 있을 때에는 입찰에 사용하는 인감으로 날인하여야 한다.

④ 입찰서는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 등에 별도로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한글로 작성하여야 하고 입찰금액의 통화는 원화로 하여야 한다.

⑤ 입찰서의 금액표시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하여야 하며, 아라비아숫자를 병기할 수 있다. 이 경우 아라비아숫자로 병기한 금액이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된 금액과 차이가 있을 때에는 한글 또는 한자로 기재한 금액에 의한다. 다만,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의 경우에는 지정된 표기방법으로 기재하여야 한다.

- 제12조(입찰서의 제출)** ① 입찰서는 1인 1통만을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우편입찰서는 봉함하여야 한다.
- ② 입찰서는 입찰일 현장에서 제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단, 우편 입찰일 경우 마감일 전일 17시까지 당사에 도착된 것에 한하여 효력이 있다. 이 경우, 우송 중의 분실, 훼손 또는 자연에 대하여 당사는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③ 발주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으로 입찰서가 제출된 때에는 당해 입찰서의 봉투 표면에 접수일시를 기재하고 확인인을 날인하여 개찰시까지 개봉하지 아니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 ④ 입찰자는 제출한 입찰서를 교환·변경 또는 취소할 수 없다. 다만,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오기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당사가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취소가 가능하며, 2단계 경쟁 등의 입찰의 경우 기술입찰을 개찰한 결과 적격자가 없거나 경미한 사항의 기술보완을 조건으로 기술적합 판정을 하는 경우에는 기술입찰서를 변경하여 제출하도록 할 수 있다.

- 제13조(장기계속용역의 입찰)** 장기계속용역의 경우에는 입찰시 수행하는 총용역을 대상으로 하여 입찰하여야 한다.

- 제14조(경쟁입찰의 성립)** ① 경쟁입찰은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써 성립한다.
- ② 계약담당직원은 시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치는 경우에는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한 기술입찰의 개찰결과 기술적격자로 확정된 자가 1인일 경우에도 가격입찰서를 개봉할 수 있다.

- 제15조(입찰의 무효)**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입찰은 무효로 한다.

1. 입찰자(법인의 경우 대표자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직접 입찰을 하지 아니하고 대리인을 통하여 입찰을 할 경우 제10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대리인이 아닌 자가 한 입찰 또는 대리권이 없는 자가 한 입찰
2. 동일사항에 대하여 타인의 대리를 겸하거나 2인 이상을 대리한 입찰
3. 입찰서의 입찰금액 등 중요한 부분이 불분명하거나 정정한 후 정정날인을 누락한 경우
4. 담합하거나 타인의 경쟁참가를 방해 또는 관계직원의 공무집행을 방해한 자의 입찰

5. 입찰자의 기명날인이 없는 입찰(입찰자의 성명을 기재하지 아니하고 대리인 성명 또는 회사명을 기재한 경우 및 입찰참가신청서 제출시 신고한 인감과 다른 인감으로 날인된 경우도 포함한다)
6. 입찰서에 기재한 중요부분에 착오가 있음을 이유로 개찰현장에서 입찰자가 입찰의 취소의사를 표시한 것으로서 계약담당직원이 이를 인정한 입찰
7. 제11조의 규정에 위반하여 소정의 입찰서를 사용하지 않거나 입찰서의 금액을 아라비아숫자로만 기재한 입찰 또는 전산서식에 의한 입찰서를 훼손하거나 전산표기 방법과 상이하게 작성·기재하여 전산처리가 되지 아니한 입찰
8. 공동계약의 공동수급체구성원이 동일 입찰건에 대하여 공동수급체를 중복적으로 결성하여 참여한 입찰, 입찰등록시 공동수급표준협정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입찰 및 공동수급체의 구성원이 5인을 초과하거나 구성원별 계약참여 최소지분율이 10%미만으로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한 입찰

제16조(입찰의 연기) ① 당사는 다음 각호의 경우 입찰공고 또는 입찰참가통지서에 기재된 입찰서 제출마감일시를 연기할 수 있다.

1.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설명요구사항의 내용이 중대하여 연기가 불가피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2. 기타 불가피한 사유로 인하여 지정된 일시에 입찰 또는 개찰을 실시하지 못한 경우
-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입찰연기의 경우에는 연기사유와 일시를 당초방법과 동일한 방법으로 공고 또는 통지하여야 한다.

제17조(재입찰 및 재공고입찰) ① 당사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자가 없거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에는 같은 장소에서 다시 입찰에 부칠 수 있다. 이 경우 입찰자 또는 입찰회수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 ② 입찰자나 낙찰자가 없는 경우 또는 낙찰자가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재공고 입찰에 부칠 수 있다.
- ③ 기술과 가격을 분리하여 입찰에 부친 경우 가격입찰서를 개찰한 결과 낙찰자를 결정할 수 없는 경우로서 기술적격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그 기술적격자에게 가격입찰서를 다시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재입찰 또는 재공고 입찰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조건을 변경할 수 없다.

제18조(낙찰자의 결정) ① 제15조 각 호에 해당되는 사유가 없는 자로서 당사가 정한

낙찰자결정기준에 적합한 자를 낙찰자로 한다.

② 계약담당직원은 개봉된 입찰서를 확인하고 유효한 입찰서의 입찰금액과 예정가격을 대조하여 지체없이 적격자를 낙찰자로 선정하여야 한다. 다만,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등 낙찰자 결정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계약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하기 전에 당해 입찰자의 입찰서, 법인등기부등본(본사, 대표자 및 상호 등 변경여부 확인), 공동수급 표준협정서 등 관계서류를 검토하여 당해 낙찰예정자의 입찰이 제15조에 따른 무효 입찰에 해당되는지의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④ 계약담당직원은 낙찰이 될 수 있는 동일가격으로 입찰한자가 2인 이상인 때에는 이행능력 심사결과 최고 점수자인 자를 결정하되, 이행능력 심사결과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에 의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⑤ 제4항의 경우 입찰자중 출석하지 아니한 자 또는 추첨을 하지 아니한 자가 있을 때에는 입찰사무에 관계없는 직원으로 하여금 추첨을 대신하게 할 수 있다.

⑥ 계약담당직원은 낙찰자로 결정된자가 계약체결 이전에 입찰무효 등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낙찰자 결정이 취소된 경우로서 동 부적격자를 제외하고 2인 이상 유효한 입찰이 성립되어 있는 때에는 차순위자 순으로 필요한 심사 등을 실시하여 낙찰자를 결정한다.

제19조(계약의 체결) ① 낙찰자는 당사로부터 낙찰통지를 받은 후 10일 이내에 소정서식의 계약서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고, 그 낙찰금액에 대한 산출내역서를 착수신고서 제출시까지 제출하여야 한다.

② 당사는 낙찰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낙찰을 취소할 수 있다.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고자 하는 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필요로 하는 서류를 계약담당직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20조(계약의 성립) 계약은 계약서를 작성하고 계약담당직원과 낙찰자가 기명·날인(외국인에 대하여 서명이 포함된 경우에는 서명을 포함)함으로써 확정한다.

제21조(계약의 착수) 계약상대자는 계약서에 별도 명시된 착수일자에 착수하여야 하며, 착수시에는 계약감독부서에 착수계와 공정표 및 기타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발주자는 계약서의 착수일자를 계약체결일로부터 7일 이내에 정하여야

한다.

제22조(계약이행보증금) ① 낙찰자는 계약체결일까지 총 계약금액(부가가치세 포함)의 10%에 해당하는 보증금을 현금, 유가증권 또는 보증보험증권 등 당사가 인정하는 방법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제23조(부정당업자의 입찰참가자격 제한) 입찰자 또는 낙찰자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월 이상 2년 이하의 기간동안 입찰참가자격 제한조치를 받게 된다.

- ① 계약을 이행함에 있어 부실 · 조잡 또는 부당하게 하거나 부정한 행위를 한 자
- ② 정당한 이유없이 계약을 체결 또는 이행하지 아니한 자
- ③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자 간에 서로 상의하여 미리 입찰가격을 협정하였거나 특정인의 낙찰을 위하여 담합한 자
- ④ 경쟁입찰에 있어서 입찰참가자격에 관한 서류 기타 계약에 관한 서류를 위조 또는 변조한 자
- ⑤ 고의로 무효의 입찰을 한 자
- ⑥ 입찰감가신청서 또는 입찰참가승낙서를 제출하고도 정당한 이유없이 당해 회계연도 중 3회 이상 입찰에 참가하지 아니한 자
- ⑦ 입찰참가를 방해하였거나 낙찰자의 계약체결 또는 그 이행을 방해한 자
- ⑧ 감독 또는 검사에 있어서 그 직무의 수행을 방해한 자
- ⑨ 당사와의 계약에 있어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해칠(품질저하, 계약기간 위배 등) 우려가 있는 자
- ⑩ 기타 당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

제24조(비밀유지의 의무) 입찰자는 당사로부터 배부받은 입찰에 관한 서류 또는 각종 자료 및 입찰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당해 입찰 외의 목적으로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제25조(기타사항) 입찰공고조건 및 본 입찰유의서에 규정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당사에서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끝.